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082
----------	------

2020. 12. 18
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황인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875번 「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김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95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이 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임대료가 공공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입주 대상인 청년계층에게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, 서울시는 최대 보증금의 50%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나 역세권청년주택 청년형의 평균 보증금은 약 6천만원으로, 청년들의 자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실정임.
- 따라서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의 지원비율을 현행 50%에서 60%로 상향 조정함으로써,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역세권청년주택의 정책적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.

- 아울러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2016.2.3.)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보증금 지원이 가능한 역세권청년주택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비율 상한을 현행 50%에서 60%로 조정함. (안 제9조제2항)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16. 2. 3.)에 따라 근거 법령 명칭을 변경함. (안 제14조제1항, 안 제15조제2항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공급에 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공급에 관한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본문 중 “지원할”을 “지원하되,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이내에서 지원할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4조제1항제7호 중 “「학교보건법」” 을 “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제11호 중 “「학교보건법」” 을 “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“시·도학교보건위원회”를 “시·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”로 한다.

제21조의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시행에 필요한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(대안)

2항에 따라 도시계획·건축·환경·교통·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 또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(이하 “시통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~ 6. (생 략)
 7.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른 교육
환경에 대한 평가
 8. · 9. (생 략)
 - ② · ③ (생 략)

제15조(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
②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,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로 하며, 부위원장은 제1호의 자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.

1. ~ 10. (생략)
11.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른 시
· 도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
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
추천하는 자 2명 이상

1. ~ 6. (현행과 같음)
 7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
 8. · 9. (현행과 같음)
 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----- 시
·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-----

<p>③ ~ ⑥ (생략) 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</u> <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</u> 으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 제21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 필요한-----</u> -----.</p>
--	---